OX Quiz
사이버폭력, 함께 맞춰보아요.

Q 친구의 굴욕사진을 장난으로 SNS에 게시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다?

O 장난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 올린 글, 사진 등으로 상대가 명예를 잃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Q 온라인 게시물은 실제 때리는 것과 달리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것이다?

X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남긴 글을 지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남아있을 수 있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Q 1:1 채팅, 개인적 쪽지로 욕설을 보내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O 장난이라도 1:1 채팅 또는 쪽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로 처벌할 수 있다.

Q 사이버상에서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 아니다?

X 신체적으로 또는 친구관계에서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혀서는 안된다.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학교나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저격하고 망신을 주는 것은 처벌될 수 있는 폭력행위이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신고하세요.

피해 입증

① **상대방 ID가 확인될 경우**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쳐

② **상대방 ID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전체, 접속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쳐

신고 방법

방문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신고 아래 사이트의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 증빙 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earch 사이버폭력,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버폭력 예방 · 정보윤리교육〉〈도란도란〉
cyberethic.edunet.net / www.dorandoran.go.kr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자료 제공
※ 교수학습자료, 학부모 교육자료, 학교단위 예방교육 사례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상담서비스 제공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스마트쉼 센터(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상다미쌤
@청예단
@#1388

117chat (앱)
경찰청 학교폭력관련 실시간 상담 채팅 앱

문자상담/신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0117

전화 신고/상담서비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학교폭력상담전화(청예단) 1588-9128

학생용

사이버폭력! 더 이상 안돼!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언어·행동을 포함하여 장난이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 대표적 유형을 알아봅시다.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묘사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 또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인터넷이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



사이버 따돌림(왕따)

인터넷 대화방,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한 뒤 놀리고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이 외에도 사이버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합시다.

01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02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자신을 숨기며 다른 사람인 척 활동하지 않고,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03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되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04 올바른 사이버 언어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바른 말씨·고운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면 바로 사과합니다.

05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06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의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07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08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의 관계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등 주위 어른들과 상의합니다.

디지털 풋프린트(Digital Footprint)란?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의미로,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상에 남긴 디지털 기록들을 말합니다. 인터넷 이용 패턴, 콘텐츠 소비 이력, SNS나 이메일, 홈페이지 방문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겨지게 되므로, 올바른 언어습관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대처합시다.

